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2일, 이성윤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25.3.3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1소위(2025.3.3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4.9.)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성윤의원)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임명 지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헌법적 질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화실)

(1)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기 제한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하여는 선출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1조제2항),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111조제3항)[1], 후임재판관의 임명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에서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되,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1)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생 략)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되(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고(제4항),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 검토의견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5. 2. 27. 선고 2025헌라1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권한침해 확인 부

분을 인용하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헌법기관 간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5헌라1(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

(1)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및 피청구인의 헌법상 작위의무의 존재

헌법은 제111조 제2항에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9인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청구인이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근본적 의의가 있다(헌재 2014. 4. 24. 2012헌마2 참조).

이와 같은 헌법 제111조 제3항의 문언이나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다만 헌법 제111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거나 그 선출과정

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대통령에게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하여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 3부(府)의 대등한 관여를 보장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한편, 헌법 제111조 제2항은 재판관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임명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헌법 제111조 제3항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온전히 행사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헌법기관 간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선출한 ○○○, ○○○, ○○○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중 ○○○과 ○○○만을 2025. 1. 1.자로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이 사건 결정이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므로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 대통령의 임명권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시기를 “7일”로 제한하고, “7일”이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5헌라1 결정)에서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으나, 헌법 제111조제2항과 「헌법재판소법」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어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시기로 규정한 “7일”이 대통령이 적법한 임명권 행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검토 내지 심사권을 행사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대통령의 헌법재판권 임명권 행사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기간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기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3건의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는바,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즉시 임명하도록 하거나(박균택의원안),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거나(서영교의원안) 또는 15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규정(권향엽의원안)하여 각 개정안마다 그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경우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아 “임명 간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5헌라1 결정)에서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제2항은 재판관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헌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률로 헌법재판관 임명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제111조제2항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제6조제1항에서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일정 기간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헌법

과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동일하게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 이후 직무수행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나.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2], 「헌법재판소법」제7조제1항에서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3].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법」제7조제2항에서는 “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

---

2) 「대한민국헌법」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법」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고 규정하고 있음[4].

참고로, 대법관의 임기 및 정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제105조[5]제2항에서는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제45조[6]에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제1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로 정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현행 「헌법재판소법」제6조제3항[7]에서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

---

4) 「헌법재판소법」제7조(재판관의 임기)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5) 「대한민국헌법」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6) 「법원조직법」제45조(임기·연임·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7) 「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

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의 공백으로 헌법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8] 개정안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대한민국헌법」제112조에서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대한민국헌법」제112조와 현행 「헌법재판소법」제7조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8)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결정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중략)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9], 전임재판관의 계속 직무 수행제도는 임기제를 전제로 후임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업무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기제의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10], 헌법에는 재판관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재판관이 정년에 달한 때 후임 재판관이 취임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헌법에 재판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의 계속 수행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11]도 있음.

둘째,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취지가 재판관의 임기제를 전제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임 재

9) 양건/김문현/남복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연구 제10권, 1999. 12, 16면.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 126면에서 재인용.

10)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 126면

11) 윤진수교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만료 후의 직무 계속 수행에 관한 고찰", 법률신문 법조광장 2016-12-26 11:58(https://www.lawtimes.co.kr/opinion/106915)

판관의 임명 등이 지연되는 경우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개정안과 같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할 것인지, 그 최장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할 것인지, 한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 이후 전임 재판관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에 있는바, 임기 만료 등 이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김현정의원안·권향엽·이성윤의원안),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거나(김종민의원안),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복기왕의원안)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범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